

## 우체국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예금 특약

### 제1조 【적용범위】

‘우체국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 【예금종류】

이 예금은 거치식 예금이다.

###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자격을 갖춘 신탁업자 및 금융투자업자(이하 ‘ISA 취급 금융기관’)로 한다.

### 제4조 【가입 및 해지】

- ① 이 예금의 계좌 개설시 명의인은 ISA 취급 금융기관으로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 중계망 전문(電文)을 통해 가입·해지 등의 거래가 가능하다.
- ② 이 예금의 가입을 위해서는 사전 우체국이 지정한 모계좌 개설 우체국에서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 제5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

### 제7조 【적용이율】

이 예금의 이율은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 등에 게시된 ISA 정기예금 가입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

### 제8조 【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예치일수/365)를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

### 제9조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

### 제10조 【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 제11조 【특별중도해지】

① 이 예금은 각 항에 해당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한 ISA 정기예금 경과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다음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3.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후 해지

4.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 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5. 신탁(일임)보수 취득

②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이때 약정이율은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 게시한 ISA 정기예금 가입기간별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 1항 제 5호의 경우에는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kr)에 게시한 약정이율을 특별중도해지이율로 한다.

1. 경과기간 6개월 미만 : 가입당시 이 예금의 3개월제 약정이율

2. 경과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가입당시 이 예금의 6개월제 약정이율

3. 경과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가입당시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율

4. 경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가입당시 이 예금의 2년제 약정이율

### 제12조 【분할해지】

- ①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별로 가입기간 중(또는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 ② 분할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신탁(일임)보수 취득의 사유로 분할해지 할 경우에는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 ③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일에는 분할해지 불가하다.

### 제13조 【자동재예치】

- ① 이 예금은 만기일에 최초 계약과 동일한 가입기간으로 원금과 이자의 합계 금액을 자동 재예치하며, 만기일이 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재예치 신규일로 한다.
- ② 자동재예치 시 적용이율은 매 재예치 시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ISA 정기예금 가입기간별 이율을 적용된다.
- ③ 자동재예치 시 우체국이 예금주에게 통지할 사항은 해당 전문으로 대신한다.

### 제14조 【기타】

- ① 이 예금은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정지, 상계 및 양도, 양수가 불가하다.
- ② 이 예금은 예금주와 우체국간의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 중계망 전문(電文)을 통해 거래하며, 통장은 발행하지 않는다.
- ③ 이 예금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다.

## 부 칙

이 특약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